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71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안철수 · 김성원 · 김미애
김대식 · 김상훈 · 이종욱
김선교 · 김은혜 · 이준석
최보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학습 · 구직 · 창업 준비 또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가 청년의 학습, 외국어 · 코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준비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년 간 인공지능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등

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3(청년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거주자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이용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금액
2. 사업소득 또는 그 밖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제126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범위,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5조의3(청년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거주자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u> <u>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이용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u>

은 금액

2. 사업소득 또는 그 밖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
스의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제1
26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
용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서비
스 이용비용의 범위, 공제의 신
청 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